#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 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 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 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u> <u>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u>동안 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2010031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년 7월 20일 www.talkingclub.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년 6월 18일

매일 영어로만 말하는

# 토킹클럽

## 정 보 공 개 서

(주)골드앤에스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식회사 골드앤에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 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 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 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 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반도아이비밸리 7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65-487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565-488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영어사업부 02-3775-420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 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 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 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q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골드앤에스 - 4 - 토킹클럽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토킹클럽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반도아이비밸리 7층			7층	
ᄼᅎᆞᄀᆮᅄᄱᇪ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다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골드앤에스	1994.11.14		1994.11.14	신승호	0	2-565-4874	02-565-4885
	법인등록번호	110	0111-1100926	사업자등록번호	Ż.	120-8	31-63837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 0 01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반도아이비밸리 7층				
사용인 (임원)	신승호	토킹클럽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급 년)			신승호	02-565-4874	02-565-488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 8 01			서울시 영등포	구 영신로 166 반도	아이비밸리 7층		
사용인 (임원)	양홍걸	토킹클럽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급 년)			신승호	02-565-4874	02-565-488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서울시 영등포	구 영신로 166 반도	.아이비밸리 7층		
(임원)	이경빈	토킹클럽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년)			신승호	02-565-4874	02-565-488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780			서울시 영등포	구 영신로 166 반도	아이비밸리 7층		
사용인	엄태섭	토킹클럽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신승호	02-565-4874	02-565-488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서울시 영등포	구 영신로 166 반도	아이비밸리 7층		
	성재용	토킹클럽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신승호	02-565-4874	02-565-4885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토킹클럽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토킹클럽	매일 영어로만 말하는 '토킹클럽' 영어말하기가 습관이 되는 '토킹클럽'
상 호	토킹클럽 OO어학원	

상표(서비스표)	토킹클럽 ③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697925
광 고		
	<b>TalkingClub</b>	☞ 토킹클럽 어학원
그 밖의 영업표지	Cowing City	TalkingClub 토킹클럽 어학원
	토킹클럽 어학원	TalkingClub

2019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한 가맹점은 '이보영의 토킹클럽' 영업표지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020년 1월 부터 신규 계약한 신규 가맹점은 '토킹클럽' 영업표지를 사용합니다.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7,605,733	2,963,769	14,641,963	9,488,858	-1,144,159	-6,253,681
2023년	15,650,914	3,424,842	12,226,072	9,949,791	-1,365,862	-2,959,689
2024년	15,859,935	2,888,200	12,971,734	9,593,956	-486,243	61,324

-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ΛIΞ	현 직위	사업경력			
산년여구	<u></u>	연 역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메사어	맹사업 신승호	신승호 대표이사	2020.12 ~ 2021.12	사내이사	경영 자문	
관련 임원			2021.12~현재	대표이사	경영 총괄	

	양홍걸	사내이사	2020.12 ~ 2021.12	대표이사	경영 총괄
	0.55	ᆲᅟᅡᄭᅜᅥᄭᄭ	2021.12~현재	사내이사	감사 위원
	이경빈	사외이사	2020.12 ~ 현재	사외이사	감사 위원
	엄태섭	사외이사	2020.12 ~ 현재	사외이사	감사 위원
	성재용	사내이사	2022.12~현재	사내이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저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경)
2024년 12월 31일	3	2	36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토킹클럽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토킹클럽	당사가 허락한	2019.11.8 출원	출원 제4020190172519	(주)골드앤에스	2021 2 26
(상표권)	상품, 용역	2021.1.13 등록	등록 제40-1697925	(구)ㄹ드앤에스	2031.2.2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은 위와 같으며, 에듀박스 토킹클럽은 당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허가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한 가맹점은 '이보영의 토킹클럽' 영업표지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020년 1월 부터 신규 계약한 신규 가맹점은 '토킹클럽' 영업표지를 사용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토킹클럽 가맹사업 현황

1. 토킹클럽을 시작한 날 : 2004년 6월

#### 2. 토킹클럽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듀박스	이보영의 토킹클럽	박춘구	2004.6. ~ 2015.10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31, 비동15층
(주)에이원앤	이보영의 토킹클럽	우국환	2015.11 ~ 2017.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31, 비동15층
(주)더블유에프엠	이보영의 토킹클럽	우국환	2017.11 ~ 201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31, 비동15층

(주)더블유에프엠	이보영의 토킹클럽	이상훈	2018.1 ~ 2019.9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31, 비동15층
(주)더블유에프엠	이보영의 토킹클럽	김병혁	2019.9 ~ 2019.1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31, 비동15층
(주)더블유에프엠	토킹클럽	김병혁	2020.1 ~ 2020.12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609호
(주)더블유에프엠	토킹클럽	양홍걸 신필순	2020.12 ~ 2020.3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9층 901호
(주)골드앤에스	토킹클럽	양홍걸 신필순	2021.3 ~ 2021.12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9층 901호
(주)골드앤에스	토킹클럽	신승호	2021.12 ~ 2023.12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9층 901호
(주)골드앤에스	토킹클럽	신승호	2024.1 ~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66 반도아이비밸리 7층

# 3. 토킹클럽 업종

영업표지	업종		
토킹클럽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외국어)	초등영어교육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토킹클럽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2.12.31				2023.12.31			2024.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8	128	-	122	122	-	117	117	-	
서울	19	19	-	19	19	-	15	15	-	
부산	4	4	-	4	4	-	3	3	-	
대구	2	2	-	2	2	-	2	2	-	
인천	10	10	-	10	10	-	10	10	-	
광주	8	8	-	10	10	-	10	10	-	
대전	6	6	-	4	4	-	4	4	-	
울산	2	2	-	2	2	-	2	2	-	
세종	-	-	-	-	-	-	-	-	-	
경기	45	45	-	39	39	-	39	39	-	
강원	-	-	-	-	-	-	-	-	-	
충북	3	3	-	2	2	-	2	2	-	
충남	5	5	-	5	5	-	5	5	-	
전북	2	2	-	2	2	-	2	2	-	
전남	3	3	-	3	3	-	3	3	-	
경북	3	3	-	3	3	-	3	3	-	
경남	16	16		17	17		17	17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토킹클럽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38	2	0	12	8	128
2023	128	4	0	10	5	122
2024	122	0	0	5	2	117

## 6. 토킹클럽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토킹클럽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주

토킹클럽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가맹	<mark>점사업자의 (</mark>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716 <b>6</b> T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17	13,580	230	80,812	2,360	27	0	107곳
서울	15	10,993	235	39,347	627	681	15	14곳
부산	3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2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10	27,190	531	80,812	2,360	388	15	7곳
광주	10	8,665	133	27,349	412	27	0	10곳
대전	4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2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경기	39	14,559	226	58,992	693	627	13	37곳
강원	-							
충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5	8,791	152	16,936	296	3,522	54	5곳
전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3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17	15,382	282	55,697	1,392	2,170	24	16곳
제주	-							

- \* 본 자료는 117개 가맹점 중 가맹본부에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107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 \* 본 자료는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 보내준 "학원(가맹점) 운영현황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보내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의 추정 매출액 산정도 정확할 수 없습니 다.
- \* 본 자료의 연 평균 매출액의 상한과 하한은 각 지역별 매출의 최상위 분원과, 최하위 분원의 자료를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 \* 위 집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 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추정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8. 토킹클럽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토킹클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17	4386일(12년2개월)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토킹클럽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52 2층				
	대표자	대표전화변	번호	=	관리 가맹점수	
호남	박혜선	(비공개)		1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		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5-02-01~2026-01-31	0 0		X		
	영남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 서길			. 39 서길 1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영남/충남	이율리아	(비공개	)	3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	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5-01-01~2025-012-31	0	0		Х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토킹클럽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항목을 대체합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골드앤에스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 체결일과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치가맹금 반환 보증	
지급조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환 사유 발생시 책임담보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예치가맹금 반환요구를 하여야 함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토킹클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가맹학원 시설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별도 시설공사계약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최초가맹금	22,000	최초 가맹계약시	개원 전 계약취소의 경우 최초 가맹비의 70% 반환	소멸성비용,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법정 반환 사유 미발생	

<sup>\* &#</sup>x27;최초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가맹계약 시 본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납입하는 비용으로서 가맹본부가 브랜드 및 지식재산의 가치,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적 가치, 가맹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sup>\* &#</sup>x27;최초가맹금'에는 가입비, 초도물품비, 광고 지원비, Know How, 매뉴얼 등 개원 프로세서 제공 비용,

초기 교육비, 기타 영업지역권 설정비 등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Talking Club' 의 가맹점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임.

\* 개원을 전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학원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개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개점행사비'는 '최초가맹금'에 비포함된 금액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임.

만약 귀하가 가맹본부의 "최초가맹금" 산정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등에 의문이 있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해소하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2) 보증금 ·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 · 담보목적물 등의 금원은 일반적인 가맹계약의 조건이 아니며, 상호 특별한 약정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납입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 전액 반환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 처리하고, 계약종료절차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예치가맹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예치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보장범위는 "최초가맹금"에 한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1,8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지정업체 없음	35,200	880	별도 계약에 의함	비용 수령 후 설비 설치 이전에 한함	실평수
간판 등 광고물 설비	지정업체 없음	6,600		별도 계약에 의함	제작 전 계약취소	40평 기준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평수 40평 기준)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 설비는 학원 로비, 강의실 등 기본적인 학원 형태를 갖추기 위한 목공, 도배, 전기, 수도, 소방 등의 설비를 말하며, 천장 및 바닥공사와 냉·난방시설 및 가구설비 등은 제외함.
- \* 간판 등 광고물 설비는 돌출간판, 전면간판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현수막 등 일시적 부착물 등은 제외함.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가 입지선정의 조력 요청
가맹희망자 (단, 가맹희망자의 요청시 당사 영어사업팀에서 조력함.) 전화:02-3775-4200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청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입점 희망지역의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입지 선정을 조력함. →현장 조사등 진행 →최적 입시 도출 기존 토킹클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해당할 경우 입점 불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학원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교육청의 학원설립·운영등록 및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학원 강사	학원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학원 관계법령(학원법)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토킹클럽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교재등 상품대금	교재등 상품대금	별도 단가 확인	상품 주문시	교재 수령후 15일 이내	교재 수령 후 15일 경과	하자담보기간 1년
연 광고분담금	㈜골드앤에스	가맹본부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균등 분담	광고실시일 이전	광고취소	광고 실행 시	가맹본부30% 이상부담
월 ETOS 비용	㈜골드앤에스	1,000	매월 말일	제공상 중대한 결함 발생시	중대한 결함 발생이 없는 경우	납입상한선 (VAT별도)
정기 교육·훈련비용	㈜골드앤에스	실비정산원칙	교육·훈련 실시 이전	교육훈련취소	교육훈련 실행 시	사전 고지
행사비용	㈜골드앤에스	가맹본부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균등 분담	행사 시행 이전	행사취소	행사 실행 시	가맹본부30% 이상부담
영업표지 변경 리모델링등에 따른 변경 비용	개별업체	가맹본부가 강제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 의 자발적 선택사항 가맹점주 부담사항	사유 발생시			1
연 브랜드 사용료	㈜골드앤에스	1,200	재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비례	소진된 계약기간비례	-
지급(이행)보증 보험료	지정업체 없음	보험금의 약2.5%	재계약시	남은 계약기간비례	소진된 계약기간비례	해당분원일 경우
지연이자	㈜골드앤에스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각각의 금전지급의무 지체시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현황	원생현황등 매출 관계 회계장부 등 자료의 유지와 제공의무 부과 등	비 정기	문의: 영어사업팀(02-3775-4200)
교육현황	교육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등	비 정기	문의: 영어사업팀(02-3775-4200)
On-line 사용현황	ETOS 사용 및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등	비 정기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00				
연 브랜드 사용료	1,200	재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 비례 반환	소진된 계약기간 비례 불반환	-
지급(이행) 보증보험료	보증금의 약2.5%수준	재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 비례 반환	소진된 계약기간 비례 불반환	상호 약정사항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한 가맹점은 '이보영의 토킹클럽' 영업표지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020년 1월 부터 신규 계약한 신규 가맹점은 '토킹클럽' 영업표지를 사용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비소멸성가맹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토킹클럽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꼭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보고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무단 영업양도 행위로 간주 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귀하가 (주)골드앤에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 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및 가 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가맹계약서의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를 원칙으로 다음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계약 종료에 따르는 조치를 계약 종료 후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

- 2. 영업비밀 등의 준수 의무에 관한 서약서 제출
- 3. 'Talking Club' 영업표지의 사용(전화번호 114안내, 인터넷 도메인 등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금지 및 세무서, 교육청 등 관공서에 등록된 'Talking Club' 영업표지의 말소
- 4. 간판, 인테리어 부착물, 내·외부 홍보 안내물, 학원차량 등 학원 시설물에서 가맹본부로부터 부여 받 은 영업표지 또는 지적 재산의 철거 및 폐기
- 5. 'Talking Club'의 커리큘럼, 학습교재 및 각종 강사용 지침서, 학원양식, 학원용품, 교습용 CD, 교구재 등 교육자료 및 각종 운영매뉴얼, 교육·훈련과 관련된 서류일체의 반환 및 폐기
- 6. 기타 'Talking Club' 의 홍보물 시안(전단지, 판촉물, 브로슈어, 각종매체의 홍보용제작물 등)의 폐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축소된 불완전한 종료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귀하는 위약벌로 금 이천만원(\(\formall^220,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토킹클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토킹클럽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토킹클럽 정규프로그램	왼쪽의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초등학생 외의 고객	토킹클럽 정규프로그램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서비스)의 가격(수강료)이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수강료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이치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등영어교육	토킹클럽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 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가맹점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는 영업지역을 위반하는 행위를 아래 표와 같이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지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영업방침의 위배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업지역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가맹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지역 위반 행위 유형

- 1. 영업지역 밖의 회원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게 하는 경우
- 2. 영업지역 밖에서 학원통학 차량을 영업상 운행하게 하는 경우

(단,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출.퇴근 행위 등 영업 준비행위는 제외)

- 3.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기타 광고·판촉 활동을 자신의 영업지역 밖에서 행하는 경우
- 4. 기타 영업지역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토킹클럽'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토킹클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토킹클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 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 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⑤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ul><li>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li><li>예→B, 아니오→⑧</li></ul>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 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   한 경우	38조1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 지 않은 경우	30718
토킹클럽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2조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 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	
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	39조2항
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ļ <b> </b>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는 '토킹클럽'의 체제유지 및 존립과 관련되는 중대하거나 긴박한 필요가 있는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 정책사항,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정책사항을 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 수정계약서(안) 작성	동의 여부 회신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 당사의 사업계획상 직영점 운영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한함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문의: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	영어사업팀
일 것	함, 30일 가량 소요)	(02-3775-4200)
-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사유가 없을 것	→ 환매 여부 통지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도인에게 가맹계약 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반사유가 없을 것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ㅁ이. 앱시 나이티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 승인 여부 통지	문의: 영어사업팀
가맹점 운영 기준을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02-3775-4200)
준수할 것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점운영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한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양수인의 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원만한 양수도 계약진행을 고려하여 양수인에 대한 최초가맹금을 적당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모든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0.4 51		
법정상속	상속인이 본부 통지 → 본부 승인 시 가능		→ 승인 여부 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 [ ] [ ] [ ] [ ]		→ 상속인과의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u> </u>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일정 기간 가맹점운영에 따른 교육 이수가 필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신청			
		가맹점사업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대리행사			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범위 내의	→ 승인 여부 통지
	→본부 승인시 가능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 · 의무 행사 가능(일정 기간 가맹점 운영에 따른 교육이수가 필수)			
업무위탁	불가능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토킹클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토킹클럽과 동일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어사업팀 (02-3775-4200)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토킹클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고려 버그에 저초디지 아느 버이 II	문의: 영어사업팀
천년 급규에 시축되시 ᆭ는 담귀 네 	선단 급규에 시축되시 は는 금위 네 	(02-3775-42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또는 '토킹클럽 지역본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학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을 목적으로 귀하의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영업장부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토킹클럽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十世	유교 유급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크지	미끄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가맹본부가		
	그랜드랑고	50%	30%이상을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분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가 균등분담	분담광고의 본사부담금 확정 → 가맹점부담액 공지	대중매체 광고 (전국 행사)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지역 연합 행사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각 가맹점사업자가 균등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 업자 부담입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으나 귀하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업표지 또는 지적 재산에 대하여 무단으로 복제물 또는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변형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 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매뉴얼, 교육자료 등 영업비밀, 경영 Know How, 사업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토킹클럽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각종 교육자료 등 영업비밀, 경영 Know How, 사업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Talking Club' 학원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손해가 금전적으로 명백히 산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이천만원 (₩ 20,000,0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배상금은 위약벌로서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위약벌보다 큰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실제 손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손해배상금, 위약벌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이행지는 가맹본부 본점 소재지이며, 이행기일 이후 그 지연이자는 연 20%로 하되 일할 계산합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혐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90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8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가맹사업자 요청시 가맹본부 조력	D-88~72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7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 받은 경우 7일 이후)	D-70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시설공사 협의	- 도면 및 견적 확인	D-69	1.영업개시 이전의
시설공사계약 체결	- 인테리어 및 간판등 광고물 설비	D-61	부담 참조
시설공사 착공	- 가맹학원 시설공사 시작	D-60	
신규원장 교육	- 신규 원장 교육 실시	D-40	
신규강사 교육	- 신규 강사 교육 실시	D-35	
시설공사 완공	- 가맹학원 시설공사 완료 (소방, 교육, 세무등 인허가 사항 포함)	D-5	
학원안전보험 가입	- 수강생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필수 사항)	D-1	
점포 개설	- 가맹학원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토킹클럽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일체 개선요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본사의 인테리어시안이 새롭게 디자인된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최초 가맹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은 가맹본사가
비용비율	강제하지 않음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사항 적용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본사는 디자인 시안만 제공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 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정기적인 가맹점 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경영진단, 경영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제시한다.	상호협의	문의: 영어사업팀 (02-3775-42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기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전반적인 경영진 단, 경영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제시한다.	상호협의	문의: 영어사업팀 (02-3775-4200)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별도의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토킹클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원장 교육	가맹학원 운영 전반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신규 강사 교육	토킹클럽의 커리큘럼등 교육프로그램의 이해와 교수법등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원장 정기 교육	영업활성화 방안 및 분원관리 우수분원 사례연구 등	합숙 or 집단 강의	매년	필수 교육
강사 정기 교육	토킹클럽 심화 교수법	집단 강의	분기별 교육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운영정책 고지 및 변경 등 운영·교육 우수사례등 정보교류	합숙 or 집단 강의	비정기교육 사전 고지함	필수 교육

\* 상기 교육일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일정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한 후 사전 고지하고, 해당교육에 대리참가는 불가함.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토킹클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원장 교육	1일(8시간)	무	
신규 강사 교육	1일(8시간)	30	
원장 정기 교육	1일(8시간)	200	
강사 정기 교육	1일(8시간)	10	
특별 교육	-	-	사전고지

- \* 상기 교육비용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 \* 교육비용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가 산정 후 제시하면 가맹점사업자 는 교육실시 이전에 입금함.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맹학원의 원장, 강사, 직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에 대리참가는 불가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타당한 사정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사전 서면보고 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해당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거나, 대리 참가하거나, 교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고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3775-42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 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 토킹클럽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인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10곳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 맹계약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 정보제공 확인

정보제공 일시 : 년 월 일

정보제공 장소 :

▷ 가맹본부정보

가 맹 본 부 : ㈜골드앤에스

대상 브랜드 : 토킹클럽

최초 등록일 : 2012년 7월 20일 등 록 번 호 : 20120100319 최종 등록일 : 2024년 8월 1일

▷ 가맹희망자정보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가맹희망자 : \_\_\_\_\_(인)